

2004년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
신청요강

2003. 12.

한국학술진흥재단

(국제협력팀)

I. 사업목적

- 대학교수의 해외방문연구지원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고, 국내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과 지역연구의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 및 연구의 국제교류 활성화 도모

II. 사업내용

1. 사업규모 : 1,979백만원 (중점연구분야 포함)

2. 지원방향

가.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, 기간별 차별화 지원

나. 특정국가에 대한 편중 지양 및 지역별 특화 전략

- 지역별 배분비율을 설정하여 특정국가 편중 지양
- 특수지역에 대한 체재비 등 인센티브 부여

다. 일반연구와 병행하여 중점연구분야 발굴 지원

※ 중점연구분야는 추후 별도 공모

3. 지원배분원칙

가. 지역별 배분비율 : 북미(50%), 유럽(30%), 기타(20%)

나. 분야별 배분비율 : 인문사회(50%), 자연(50%)

다. 기간별 배분비율 : 인문사회의 경우, 1년(60%), 6개월(40%)

※ 지역별, 분야별, 기간별 배분현황

(단위:%)

구 분	미주(50)		유럽(30)		기타(20)	
	인문(25)	자연(25)	인문(15)	자연(15)	인문(10)	자연(10)
6개월	40	100	40	100	40	100
1년	60	-	60	-	60	-

※ 10% 범위 내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조정함

4. 지원분야 및 방식

- 가. 지원분야 : 전 학문분야
- 나. 지원방식 : 단독연구

5. 지원형태 및 기간

- 가. 인문사회계열 : 6개월, 1년 연구
- 나. 자연계열 : 6개월 연구 (단, 외국학자와의 공동연구는 1년 가능)

6. 지원규모

- 가. 6개월 연구 : 1,500만원
- 나. 1년 연구 : 2,500만원

※ 특수지역 방문연구는 체재비(500만원 이내) 별도 지원함

Ⅲ. 공모 및 신청

1. 공모 방법

- 대학의 총(학)장에게 공문발송
- 재단 홈페이지(<http://www.krf.or.kr>)를 통하여 일괄 공고

2. 신청 방법 및 기간

가. 온라인 신청

신청자는 온라인 신청 전 ① 해외방문 가능여부를 소속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, ② 재단 홈페이지 「학술연구자정보」 코너를 통해 본인의 정보를 직접 입력 또는 수정한 뒤 이를 확인한 후 온라인 신청

1) 신청기간 : 2004. 1. 19(월) ~ 27(화) 17:30까지

- 신청방법 : 연구자가 재단 홈페이지(www.krf.or.kr)에 접속하여 신청함
- 신청(입력)내용 : 온라인 신청 1주일 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함

나. 연구계획 관련 파일 탑재

1) 탑재기간 : 2003. 1. 28(수) ~ 30(금) 17:00까지

2) 탑재자료

- 연구계획서
- 방문기관 동의서 또는 교환서신(e-mail 가능) 등 증빙서류
(파일 탑재가 불가능한 경우 off-line으로 기한 내 제출)

3) 파일형식 : 한글 또는 MS워드 (여타 형식은 탑재할 수 없음)

4) 탑재방법 : 부여된 과제번호를 확인한 후 '탑재' 아이콘을 클릭하여 파일
탑재

※ 기한 내 미 탑재 시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

※ 접수번호 확인 : 온라인 신청이 완료된 후에만 확인할 수 있음

※ 과제번호 확인 : 과제번호는 2003. 1. 28(수)부터 재단 홈페이지에서
조회가 가능하며 확인 후 연구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함

3. 신청자격 및 요건

가. 신청자격 : 국내 대학(교) 전임교원이상의 연구자

나. 신청요건

-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업적이 있는 연구자에 한함

■ 1999. 1. 1부터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국제적 수준 및 전국규모
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, 특허 및 전문학술 저서(학술적 가치가 있는
역서 포함) 등의 연구실적 중

- **인문·사회계열** (예술·체육 포함) : 재단 등재(등재후보)학술지 또는
A&HCI, S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2편 이상인 연구자 (단,
단독 저서 및 역서 1편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음)

※ 단독 저서 및 역서는 논문 2편으로 인정 (공동 저서 및 역서는 논문
1편으로 인정)

- **자연계열** : SCI급(SCI 및 SCIE 등)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(등록 완료
된 외국특허 포함)이 3편 이상인 연구자

※ 단, 특수한 분야에 있어 등재(등재후보)학술지 **【인문·사회계열】** 또는
SCI급 **【자연계열】** 학술지 등에 게재가 어려운 분야는 심사 시 참고할
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 시 작성하여야 함

4. 연구비 신청 및 연구참여 제한

가. 연구비 신청 제한

-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당초 최종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
- 학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
-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최하위 등급(D급)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(단, 2000년 이후 지원과제는 최하위 등급(D급)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)
- 동 사업 기 수혜자로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연구자
-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기간과 해외방문기간이 중복되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(BK21 사업 포함)
 - ※ 기 수혜 받은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이 종료되어야만 방문연구 수행이 가능함

나. 연구 참여 제한

-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나,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. 단,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계속과제 중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4.12.31 이후인 과제는 연간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며,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등을 수행한 경우는 연구 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
- ※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는 선정에서 제외함

IV. 심사 및 선정

1. 심사절차

단계별	심사구분	심사주관	심사내용
1 단계	요건심사	재단	신청자격 여부
2 단계	전공심사	패널심사단	연구계획서 및 연구업적 심사
3 단계	종합심사	국제학술교류증진위원회	지원과제 선정

2. 심사방법 및 내용

가. 제 1 단계 심사 (요건심사)

- 심사주관 : 재단
- 심사방법 : 신청요강에 의한 요건 저촉여부 등 검토 (2단계 심사 가부 결정)

나. 제 2 단계 심사 (전공심사)

- 심사주관 : 패널심사단
- 심사내용 : 연구계획서 및 연구업적
 - ※ 지역 및 연구기간에 대한 분리(Track) 심사를 실시함
- 심사항목 및 배점 : 6개 항목 100점 (별첨)

다. 제 3 단계 심사 (종합심사)

- 심사주관 : 국제학술교류증진위원회
- 심사내용 : 전공심사결과 검토 및 지원과제 선정
- 선정원칙 : 심사점수 우선순위와 지역별, 분야별 및 기간별 형평성 등을 고려함

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선정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함

- ※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, 선정 및 지원에서 제외 조치함
 -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의거, 징계처분·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연구자

-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거, 징계처분 종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연구자
- 타 기관으로부터 동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연구자
- 연구계획서 등 제반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연구자
- 2004. 12. 31까지 출국하지 않은 연구자 (단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, 사전에 재단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)

V. 연구과제 수행

1. 출국 : 선정통보일로부터 2004. 12. 31까지 출국을 원칙으로 함

※ 단, 2004. 1. 1 이후 선정통보일 전에 기 출국한 경우에도 소급지원 조치함

2. 연구기간 : 실제 출국일로부터 1년(또는 6개월)으로 기산함

※ 단, 2004. 1. 1 이전에 출국한 경우, 2004. 1. 1을 연구개시일로 함

3. 일시귀국

- 방문연구자는 방문연구기간 중 임의로 연구를 중단 또는 일시귀국 할 수 없음. 단,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, 일시 및 조기귀국 허용일수(1년 방문연구자는 30일, 6개월 방문연구자는 15일) 내에서 귀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방문연구자는 사전에 “일시귀국 사유서”(자유형식)를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
- 일시귀국할 경우, 제반 경비는 방문연구자 본인이 부담함

4. 연구비 회수 및 제재

- 방문연구자가 연구기간 중 연구를 중단하고 귀국하거나 일시 또는 조기귀국한 경우, 소속기관장은 다음과 같이 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연구비를 회수·반납하여야 함
- (1) 방문연구 중단 : 중단일로부터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기 지급된 연구비를 일할 계산하여 회수·반납하고, 방문연구자를 즉시 귀국시켜야 함

(2) 일시 및 조기귀국 : 일시 및 조기귀국은 허용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이를 초과한 경우, 기 지급된 연구비를 일할 계산하여 회수 조치함

(3) 지급중지 및 방문연구비(전액 또는 일부) 회수

-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, 재단은 해당 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, 연구자의 소속기관장은 재단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기 지급된 연구비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, 재단에 반납하여야 함
 -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
 -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
 - 잦은 일시귀국 등으로 방문연구비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 -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방문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경우
 - 중간보고 등 각종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한 경우
 - 연구결과논문이 표절로 판단(인정)될 경우
 - 결과보고를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
 - 재단 이외의 타 기관에서 유사한 과제로 연구비를 이중 지원 받은 경우
 - 연구수행 중 재단이 정한 의무사항(협약서 및 관리지침)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 - 기타 사유로 연구자가 더 이상 방문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

5. 연구계획변경 : 연구계획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

※ 단, 당초 연구계획서와 동일하나 연구수행 도중 불가피한 경우, 연구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

6. 보고서 제출 및 평가

가. 도착보고 : 출국 후 1개월 이내에 「체재지 도착보고서」 제출

나. 중간보고

- 1년 방문연구 : 출국 6개월경과 후 「중간보고서」 및 「현지현황보고서」 제출
- 6개월 방문연구 : 출국 3개월경과 후 「현지현황보고서」 제출

다. 귀국보고 :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「귀국보고서」 제출

라. 결과보고 :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

(1) 제출자료

(가)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1부

(나) 연구요약문(국·영문) 1부

(다) 연구결과보고서 3부

※ 국문 연구요약문은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

※ (가)~(다)의 자료는 한글, MS워드 또는 PDF파일로 작성하여 디스켓으로 제출

(2) 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: 당초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미 제출 시 연구비 전액을 환수하고, 향후 5년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지원에 대하여 연구비 신청을 제한함

※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(표절행위 등)로 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재단 관리지침 및 협약에 의거한 제재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함

마. 최종연구결과물(게재논문 또는 저서) 제출

(1) 최종연구결과물 제출에 대한 책무

○ 최종연구결과물은 아래와 같이 국내·외 전문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

인문사회계열(예술 및 체육 포함)	자연계열
-학술진흥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 -국제적 수준(A&HCI, SSCI급) 학술지 -전문학술저서	- <u>국외의 국제적 수준(SCI&SCIE급) 학술지</u>

※ 신청 시 연구계획서에 게재예정 학술지를 명기하고,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였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평가 후 수준미달의 경우에는 경고 조치함

(2) 최종 연구결과물 제출시기 :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

※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치 아니함

(3) 최종 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할 경우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

○ 국문표기 : “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(KRF-2004-013-과제번호)”

○ 영문표기 : “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. (KRF-2004-013-과제번호)”

※ 기타 외국어로 표기할 경우, 상기 내용에 근거하여 표기함

※ 재단이 아닌 다른 연구비 지원기관의 일부 보조표기 또는 병기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

(4) 최종 연구결과물 미 제출자에 대한 관리

○ 최종연구결과물을 국내·외학술지에 게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학술저서로 출판하지 아니한 경우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
- 합당하지 못한 사유는 제재 조치함(논문평가 C, D급과 동일한 제재)

- 합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평가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, 평가결과 C, D급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지원을 일정기간(C급 3년, D급 5년) 제한함

- 당초 계획된 연구결과의 미 도출로 논문게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구과제의 진행과정 및 결과를 제출 받아 성실성, 연구과정의 적합성 등을 심사 평가함

바. 최종 연구결과 사후 관리

(1) 최종 연구결과논문은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함

○ 최종 연구결과논문의 원문정보서비스(Full-text service) 실시

○ 연구현황, 통계 등의 제공

- (2) 연구성과로 발생한 제 권리(저작권, 특허권, 실용신안권 등)는 방문연구자 소속기관의 소유(협약서 상 명시)로 함. 단, 방문연구자 소속기관은 제 권리와 관련된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 및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함(기술이전촉진법 제 16조 준용)

사. 연구성과 Follow-up 시스템

-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최종 연구결과물 제출 후에라도 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물(논문, 저서, 보고서, 특허, 기술, 발명, 세계인명사전 등재, 언론보도 등)을 게재하여야 함

문 의 처

(137-17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

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협력팀

Tel (02)3460-5604 Fax (02)3460-5578

E-mail : grace292@ms.krf.or.kr

재단 홈페이지(<http://www.krf.or.kr>)

<별첨>

【심사항목 및 배점】

심사항목	측정지표	심사내용 (예시)
타당성 (30)	해외방문연구의 타당성 및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반드시 해당국가(기관)에서 수행해야 하는가 ○ 해당국가 counterpart와 공동연구 및 협력이 가능하며, 필요한가 ○ 해당기관의 각종 기자재 사용이 가능하며, 필요한가
독창성 (20)	주제의 창의성 및 독자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금까지 국내에서 연구(시도)되지 않았던 주제인가 ○ 고유한 지식체계를 창출하는가 ○ 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를 창출하는가 ○ 새로운 해석이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가
	방법의 창의성 및 독자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독창적인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는가 ○ 새로운 자료수집 방법(도구)을 시도하는가 ○ 새로운 분석 기법을 활용하는가
학문발전 공헌도 (20)	학문적 가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술적 측면에서 해외방문연구가 필요한 분야·주제인가 ○ 기존의 국내연구성과를 발전시키는가
	학문의 균형발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당 국가(지역)의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가 ○ 해당 학문분야가 희귀하거나 소외되어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가
	학문의 파급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당국가(기관)에 국내 연구성과 확산이 가능하며, 필요한가 ○ 연구결과가 국내의 많은 후속연구를 파생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가
	교육과 연계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 결과가 교육에 환류될 가능성이 높은가 ○ 연구 결과가 교육 내용으로서 중요성이 높은가 ○ 학문후속세대의 연구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하는가
연구 내용 및 방법 (10)	연구내용의 필요충분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내용 범위가 적절한가 ○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하는가 ○ 포함된 내용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것들인가
	연구방법의 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문제 해결에 적합한 접근방법인가 ○ 자료수집 방법은 적절한가 ○ 자료분석(실험 또는 이론계산) 및 결과해석 방법은 적절한가
	실행계획의 구체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외방문연구 수행과정이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○ 자료수집 대상, 도구, 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○ 자료분석 및 결과해석을 위한 자료의 정리, 분석도구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
선행연구 (10)	선행연구의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요한 선행연구들이 빠짐없이 검토되었는가 ○ 선행연구들은 정확하고 치밀하게 분석되었는가
	인용 및 참고문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용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가 ○ 참고문헌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
연구역량 (10)	연구실적 및 연구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외방문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요건(언어 구사 능력 등)이 충족되는가 ○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○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○ 대표논문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질적 수준에 도달하는가

※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측정지표 및 심사내용은 변경 또는 추가 가능함.

<양식 #1>

※ 접수번호	On-line 신청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.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※ 과제번호	On-line 신청마감 후 부여받은 과제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.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 계획서

(사업명 :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)

연구과제명	국 문			
	영 문			
연구기간	· 1년 ()	방문국가		
	· 6개월()	출국일	2004년 월 일	
방문기관명	1.	계재예정 학술지명	1.	
	2.		2.	
	3.		3.	

- ※ 방문국가는 1개국으로 한정하되, 방문기관은 1~3개 기관을 접촉하여 방문연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관을 최종 선택하여 주십시오.
- ※ 출국일은 가능한 실제 출국예정 월·일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, 2004. 12. 31이전에 반드시 출국하셔야 함을 유념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2004년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

※ 접수 번호 On-line 신청 시 부여 받은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.

※ 과제 번호 On-line 신청 마감 후 부여받은 과제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.

연구과제명	국 문	
	영 문	

I. 연구계획

- ※ 연구계획은 “심사항목 및 측정지표”를 참조하시어 기술하되, 총 20쪽 이내 (방문기관 동의서 또는 교환서신은 별도)로 기술하십시오. (서신은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)
- ※ 본 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(Blind Test)로 진행됩니다.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청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기재하지 마십시오. (방문기관 동의서 또는 교환서신 상의 신청자의 성명도 지워주십시오)

II. 연구수행계획

연구추진계획

년 월 일	연구수행내용	비 고